

目 次

1. '94年度 下半期郡政主要事業場 現地確認 計劃
및 結果 ————— 22

2. 平昌郡障礙人乗用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課稅
免除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 62

3. 平昌郡旅客自動車터미널에對한綜合土地稅不
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 65

4.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 67

— '9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확 인 계 획

평 창 군 의 회

— '9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확 인 계 획

- 년중 계획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 집행부의 적시성 있는 사업수행을 촉구하고,
 -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도모하며,
 - 정기회를 대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기본계획

- 기 간 : '94. 10. 21 ~ 11. 2 (13일간)
- 대상사업 : '94 년도 군정 주요투자사업 62건
- 확 인 자 : 의장외 7인
- 확인반 편성
 - 총 괄 : 의 장
 - 반 원 : 부의장, 이치옥, 이상훈, 박용태,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의원
 - 사무보조 : 의회사무과 직원4명

○ 확인일정

일 자	확 인 대 상	대상사업건수	비 고
계	8 개 읍면	62	
10. 21(금)	도 암 면	6	
10. 24(월)	진 부 면	6	
10. 25(화)	용 평 면	6	
10. 27(목)	봉 평 면	3	
10. 28(금)	평 창 읍	12	
10. 31(월)	미 탄 면	11	
11. 1(화)	방 립 면	10	
11. 2(수)	대 화 면	8	.결과집계

□ 세부시행계획

1. 일일시간계획

시 간			활 동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시 간		
-	10:00	-	. 읍면사무소 도착	.사업주관부서 협조
10:00	10:30	30	. 휴식및 의원 간담회	
10:30	11:30	60	. 사업추진상황 청취	
11:30	12:00	30	. 현지확인일정 협의	
12:00	13:00	60	. 중식(현지)	
13:00	17:00	240	. 현지 사업장 확인	
17:00	17:30	30	. 휴식및 의원간담회	
17:30	-	-	. 귀 가	

2. 현지활동계획

-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청취(읍면 회의실)
- 군및 읍면 주요사업(시책)조서에 의거 현지확인및 관련실무자 의견청취
- 조서에 의한 정실시공여부 점검및 주민여론 청취
-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및 운영실태 확인
- 사업장별 문제점및 개선방안 도출분석

3. 기타 필요사항

가. 현지활동자료준비

- 대상사업 : 별첨 대상사업목록에 의한 전사업(62건)
- 자료작성 :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주요사업조서 작성(읍면사업포함)
- 자료제공 : '94. 10. 18

나. 현지활동차량 확보

- 읍면도착및 귀가 : 개별
- 현지활동: 의회 업무용 승용차 활용
 - 승용차 운행이 곤란한 지역은 집행기관 지프차 이용(사전검토)

다. 현지활동에 따른 식사문제 :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

라. 현지활동사항 기록보존관리

□ 집행기관 협조사항

1. 주요사업조서 작성 제출

- 별첨서식에 의거 대상사업별로 작성 '94. 10. 18 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 (제출서식 임의조정 가능)
 - 대상사업 : 별첨목록의 전사업 (62건)
 - 작성기준일 : '94. 10. 15현재
 - 규 격 : A4 복사용지 상철 (워드프로세서 작성)
 - 편 철 : 읍면별 구분하여 표지, 목차, 군사업 읍면사업순
 - 제출부수 : 11부 (합철3부, 분철8)

2. 현지안내및 사업현황 설명

- 현지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 : 사업관계부서
- 기타사업과 관련된 확인자료 지참 설명
 - 설계도서, 공고, 입찰, 계약, 착공, 설계변경, 준공등 관련자료 (문서)
- 당일 사업장별 현지확인 시간계획 작성 (당해읍면별)
- 사업추진상황 설명 장소준비 : 읍면 회의실등 활용

주요 사업 조서

사업명 :

사업개요

○ 위치 : 읍면 리

○ 사업규모 :

○ 사업비 : 천원(총사업비 : 천원)

- 국비: 도비 : 군비: 자담:

○ 시행기간 :

○ 현공정 :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추진상황

공사명				도급자			감독공무원		
입찰 · 계약사항	시행일자	년 월 일	입찰 일자	년	월	일	입찰참가자	개업체	
	설계 금액	순공사비			기초 금액	순공사비			
		잡비				잡비			
		계				계			
계약금액	순공사비			계약방법 (일반) (지명) (수의)	계약 일자		년 월 일		
	잡비								
	계								
설계 변경	년 월 일	증감액	변경금액	<설계변경사유>					
계약 내용	구분	계약상	실제	<향후계약변경전망>					
	착공								
	준공								
	변경준공								
	변경준공								
<특기사항>									

'94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업명	비고
합계	62 건	
평창읍	12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운동장 배수로설치 2. 상리 오등골 농촌마을길포장공사 3. 상리교 가설공사 4. 쓰레기 선별창고 5.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 천변리 주차장조성 7. 젓소능력배가 마을육성 8. 임하교 가설공사 9. 다수교 보강공사 10. 1읍면 1특화사업 11. 방목초지 토종닭 방사시범 12. 평창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미탄면	11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2리 농촌마을길포장 2. 회동리 농촌마을길포장 3. 한탄리 농로보수 4. 기계화전업농 육성 	

'94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업명	비고
미탄면	5. 마을공동건조 저장시설 6. 1읍면 1특화사업 7. 한우종합대책 8. 고령지 여름느타리재배 9. 톱밥 발효급여 고품질 계란생산 10. 폐광이용 여름느타리재배 11. 톱밥발효 축사시설	
방림면	10 건	
	1. 방림1리 농촌마을길포장 2. 운교2리 " 3. 계촌6리 " 4. 오지종합 개발사업(계촌2리) 5. 1읍면 1특화사업(계촌2리) 6. 어도시설 7. 주택개량(11동) 8. 방림5리 하수도 토관공사 9. 방림지역 상수도 사업(읍면건의사업) 10. 방림면 청사수리	

'94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업명	비고
대화면	8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안미3리 농촌마을길포장 2. 하안미1리 " 3. 평창종합 체육관 건립 4.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5.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 마을공동 건조 저장시설 7. 대화정주권 개발사업(교량가설) 8. 대화8리 범구 농작물반출도로개설 	
봉평면	3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봉평상수도 급수 시설 보수(7건) 2. 휘닉스파크리조트건설(현황및 개발,피해등 주민관련사항) 3. 봉평소도읍정비사업 	
용평면	6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평면 소재지정비 2. 장평1리부녀회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3. 금당 ~ 궁항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 관광농원(청농원)시설 상황 5. 한국청소년 수련장 건설사업 6. 속사 소하천시범정비사업 	

'94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업명	비고
진부면	6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정지구 택지조성사업 2. 교수부지조성 3. 거문 ~ 하진부간 도로 확.포장공사 4. 농촌오수처리장 5. 국민학교체육관 건립(진부체육관) 6. 신기리 화훼단지조성 	
도암면	6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횡계 8리소교량가설(93수해복구) 2. 횡계 3리소규모시설 수해복구(찰쌍기) 3. 차항 리도 수해복구공사(찰쌍기) 4. 차항1.2리 농촌마을길포장 5. 제3권역수해복구공사(차항2리 2지구 석축.포장) 6. 병내리 화훼단지조성 	

< '9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확 인 결 과

平 昌 郡 議 會

현 지 확 인 결 과

□ 확인개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1994. 10. 21 ~ 11. 2 (13일간)
- 대상사업 : '94년도 군정주요투자사업 62건
- 확 인 반 : 1개반 12명 (의원8,사무보조4명)
 - . 총괄 : 의장
 - . 반원 : 부의장, 이치옥, 이상훈, 박용태,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의원
 - . 사무보조: 의회사무과직원 4명
- 주요내용
 - .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및 예산집행.관리상황
 -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분석
 - .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
 - . 지역주민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 정보획득

□ 현지확인결과

가. 총괄

○ 확인사업장수 : 총62개대상사업장중 44개사업

(단위 : 개소)

구분 읍면	총 대상 사업장	확 인 사업장	개 보 사 업 장	선 완 장	확인일자	비 고
계	62	44	25		'94. 10.21 ~ '94. 11. 2	
평창읍	12	8	4		10.28	
미탄면	11	7	3		10.31	
방림면	10	6	6		11. 1	
대화면	8	3	1		11. 2	
봉평면	3	2	2		10.27	
용평면	6	6	3		10.25	
진부면	6	6	4		10.24	
도암면	6	6	2		10.21	

나.사업장별 확인결과

【평창읍】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리교 가설공사 ○ 천변리 주차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와 연결되는 교량진입로가 국도보다 낮고 경사로 인하여 국도진입시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의 대책이 필요함. ○ 상류쪽 옹벽 마무리 부분이 도로면의 제방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속에 의한 소용돌이 현상으로 제방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 옹벽상단부위에 설치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보완 검토를 통하여 차량및 어린이들의 접근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하고, ○ 옹벽설치부위에 들출 차단시설등의 설치로 주차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주차장 부지내 위치한 보호수(느티나무)의 생육장애등에 대한 관리 대책이 요구됨. 	

【 평창읍 】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 평창상수도시설확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 영농을 추구하는 현 농촌실정에 비추어 건축규모가 협소(40평)한 것으로 사료되며, ○ 면적에 비하여 지붕 철골구조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에 동절기 폭설시 붕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의 검토가 요구됨. ○ 탁류시를 대비한 고속침전기의 설치만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사료됨. 침전지 시설확충과 취수보의 설치에 의한 자정작용이 이루어질수 있는 보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연간 평균 탁류일수를 비교검토하여 시약의 투입 및 전기사용량의 증가등에 따른 시설유지 소요예산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침전기 가동시 투입되는 약품의 제반 사용방법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인체에 위해한 요소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전문 관리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미탄면 】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마을공동건조 저장고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기계에 대한 사용 형식승인은 되어 있으나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한 전기 사용 형식승인의 여부가 불투명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며, ○ 사용방법에 대한 철저한 지도 교육을 통하여 시설사용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폐광이용 느타리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균 접종작업시 발생하는 유해가스(탄산가스)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보완을 통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꾸준한 소득작목의 사후 지도. 관리가 요구됨. 	
○ 틈밭발효급여 고품질계란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생산시설로 인하여 유통거래망 구축 지난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어려운점을 감안 추후 사육규모 확대등 육성대책이 필요함. 	

【방림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p>○ 오지종합개발사업</p> <p>○ 어도시설</p>	<p>○ 도로 확.포장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회사를 받아서 등기이전후 시행함이 타당하나, 소유주로부터 기각이 불투명한 사용승락서 청구만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금후 편입부지 보상문제로 집단민원의 야기가 우려됨.</p> <p>○ 도로변 배수로 설치(흙관매설)지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검토하여 사후 도로유실등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요구됨.</p> <p>○ 당해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감안 UR대처 고소득자원의 개발보급이 요구됨.</p> <p>○ 당초사업 선정(평창:뇌운보)후 시행단계에서 사전 여건 판단 미흡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봉평:홍정보)되어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있는바 금후 사업선정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p> <p>○ 사업대상지를 하천 상류지역(홍정천)으로 선정함은 어도시설로서의 효용가치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p>	

【 방림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p>○ 방림지역상수도사업</p> <p>○ 계촌4리마을길 포장공사</p> <p>○ 한우종합대책 (계촌4리 박정각)</p>	<p>으로 예산투자의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p> <p>○ 추진 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인 사업검토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의 확행이 요구됨</p> <p>○ 인가및 농경지 경작규모를 감안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예산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할것이나 사업장선정(인가 2가구,농경지 소규모)시 사전 검토와 시공시 노건 마무리 포장이 미흡하였음.</p> <p>○ 사업자 선정시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미흡및 사업자의 경영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사업계획 미숙지)</p> <p>○ 사업실행 실적이 부진하는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지도 관리가 미흡하므로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한 누수없는 사업수행이 요구됨</p> <p>○ 사업시행이 축협과 양분되어 (예산지원)농가</p>	

【 방림면 】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p>○ 방림5리 배수로 설치공사</p>	<p>선정및 사업추진에 특혜성 시비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p> <p>○ 현 배수로 설치사업 시행으로는 주민의 불편 및 인근지역 피해방지에 미흡한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실무부서와 유관기관(국토관리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배수로 설치(홈관 1개소예정) 장소및 규모를 재검토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대화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상안미1리 교량 가설공사	○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봉평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p>○ 휘닉스파크리조트건설(현황 및개발피해등 주민관련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에 의거 고속도로 진입로의 문제(주민이용불편)가 대두되고 있으며, 동개발과 관련하여 시가지 우회도로의 조기추진이 필요함. ○ 하류지역 수질오염을 예방 시설내 방류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공지도가 요구됨. ○ 지역주민, 지도층인사등을 초청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의 마찰해소에 노력하고, 사업완공후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토록 하는등 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특별대책이 요구됨. 	
<p>○ 봉평소도움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정비 사업의목적·추진방향등의 동일성에 비추어 관련 유관기관및 부서와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자의에 의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함이 타당함. 	

【봉평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가옥의 경우 건폐율및 용적율을 감안한 재건축 추진지도로 사후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토록 하고, ○ 토지보상시 현행 70%의 선금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일시불로 지급토록하는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장구가 요구됨. ○ 사업별 소요예산 판단에 정확을 기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추진하여 공신력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됨. ○ 도움정비에 따른 공공용지(구거.폐도등)등을 주민이 활용(매각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이 요구됨. 	

【용평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속사소하천시범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전 철저한 계획수립 검토를 통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일부주민의 반발)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 하천내 구교량 철거시 방치된 교각2기를 철거토록하고, 철저한 시공감독을 통하여 시범정비사업으로서의 완벽한 시공과 보존관리 대책이 요망됨. 	
○ 한국청소년수련장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보상.잔여묘지 이장처리의 조속한 해결과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의 소지가 있는 농수로의 토사유입등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요구됨. 	
○ 관광농원(청농원)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자체사업중 가축사육및 휴식시설(방가로, 여관, 야영장, 휴게시설및식당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향후 철저한 환경오염방지가 이루어지도록 사후지도.관리가 요구됨. 	

【진부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국민학교 체육관건립(진부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내 조명실의 미설치로 각종 공연.학예회 등 문화행사시 활용에 적합치 못하므로 건축공사당시에 별도의 조명실을 설치함이 타당하고, 방음처리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시설이용도를 높이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 군의 예산지원으로 건립하는 군민문화 시설임을 감안 건립후의 철저한 사후지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여야할 것임. 	
○ 신기리 화훼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지원이후 지도관리가 소홀한것으로 사료되며, UR대처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및 수출등에 수반되는 행정지원이 요청됨. 	
○ 송정지구택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내 지선도로의 협소로 차량주차시 소방차 및 응급차량등의 교행이 불가능하여 분양자와 주변에서 사업에 대한 여론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사전대처로 물의야기 방지가 필요함. 	

【 전 부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 고수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의 밀집으로 미관상 주위의 환경에 맞지 않고 전주의 파손시에 인적, 물적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추후 유사한 공사시행시 지하매설의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잔여 미분양 택지를 조속히 분양 군세입 결합 방지에 최선을 기하고, 매년 과다 세입계상으로 세출예산의 결합이 누적되고 있는바,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장구가 요구됨. ○ 고수부지의 특성상 우기에는 물에 잠기고, 건기에는 부지내 시설의 활용으로 양면성을 띄고 있어야하나, 시공당시부터 노면을 반대편 제방과 같은 높이로 설치를 하여 강폭의 상대적인 협소로 제방유실과 하천범람등 수해피해의 위험요소가 있고, ○ 현재 들망태로 마무리 되어있는 법면의 경우 부지내 상류쪽 모서리에서 제방쪽까지 50m 	

【진부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p>정도는 강우시 급류와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지점으로서 용벽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 <p>○ 부지내 여가시설및 각종 체육부대시설의 설치로 주민 휴식공간 조성이 필요함.</p>	

【 도암면 】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p>○ 황계8리 소교량 가설</p> <p>○ 병내리 화훼단지 조성</p>	<p>○ 주변 개발계획(택지조성)여건상 금후수해피해 재발이 우려됨, 관련 소하천 정비를 면밀히 검토시행이 요구됨.</p> <p>○ UR연계 정부 지원사업임을 감안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시공방지 대책이 요구됨.</p> <p>○ 참여농가 자부담에 대한 재정능력과 향후 수지를 분석 시공에서 경영으로 연결되도록 철저한 사후지도관리가 요망됨.</p>	

□ 현지확인결과 처리계획

- 확인결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 제도개선및 시정요구 사항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해결될수 있도록 추진.
- 읍면 건의사항은 의정활동에 참고토록하고 세부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요청.

□ 읍면건의사항

가. 총괄

(단위 : 건수/백만원)

구분 읍면별	계	제도개선사업	예산수반	사업비	비고
계	27	2	25	18,479	
평창읍	3	-	3	610	
미탄면	2	1	1	-	
방림면	4	-	4	1,988	
대화면	3	-	3	2,180	
봉평면	8	-	8	1,263	
용평면	-	-	-	-	
진부면	3	-	3	390	
도암면	4	1	3	12,048	

나. 읍면별 건의사항

(단위: 천원)

읍면별	사업명	건의요지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평창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이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매립장 확보면적의 협소로 향후 1~2년내 매립불가 초래 - 매립지 시가지 가시구역으로 소각에 따른 민원야기 - 하천에 인접하여 폐수침하시 하천오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마지2리 다래골 ·면적:30,000평 	500,000	
	취락구조개선마을 진입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적기출하 지남으로 저소득 낙후지역으로 전락 - 2개리 60여가구의 차량및 주민소통 불편초래 - 취락구조개선사업과 병행 실시로 마을면모 일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입탄리 진입로 ·L:500m ·B:4m 	40,000	
	대하리 간이상수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간이상수도의 오염(질산질 질소 과다검출)으로 식수 불가 - 2km이상의 거리에서 물을 길러다 식수로 사용함으로 인력부족난을 가중시키고 민원야기가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대하리 ·배수관:3,000m ·배수지1기 ·집수정1기 	70,000	

(단위: 천원)

읍면별	사 업 명	건 의 요 지	사 업 규 모		비고
			사 업 량	사업비	
미탄면	서천지구 경 지정리사업 장 도수로 시설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도수로에서 지류로 나가 는 블럭단위내 도수로의 경 우 토지의 지질상 누수가 심 하고 토지내 농용수 유입이 불량하여 이의 근본적인 대 책이 요구됨. - 현행 단보당 경지정리사업비 확정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 을 감안한 차등 설계가 이루 워져야 함. 			
	미탄상수도 누수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취수율이 30%에 불과하여 상수도 운영예산의 심한 적 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 전반적인 누수현상으로 대대 적인 시설보완대책이 대두되 고 있음. 			

(단위: 천원)

읍면별	사업명	건의요지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방림면	방림면 소재지 정비	- 면소재지의 시가지 미형성으로 미관저해및 주민결집이 어려움. - 소재지 환경개선, 지역발전및 주차난 해소	<면소재지> -인도브럭500m -주택용자10호 <계촌출장소> -도로개설200m -진흥지역해재	430,000 (190,000) (240,000)	
	187번군도 확포장	-새마을광역권사업시행 도로로서 노폭의 협소로 차량교통 불편 -농산물 반출및 주민교통 이용량이 많은 도로임.	-확포장 [L:3,260m B:12m -교량가설: 1개소 [L:60m B:12m -용지보상100	1,300,800 (900,000) (300,000) (100,800)	
	공설묘지조성 진입로 포장	-주민동의서 장구시 약속된 사업으로서 묘지조성지의 진입로 시설의 전무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함.	-도로확포장 [L:700m B:4m -암거1개소 [L:10m B:6m -가로등3개소	76,500 (70,000) (50,000) (15,000)	
	계촌지구 소하천 교량가설	-농산물 반출및 주민통행 불편 -학생등하교 편의및 주민교통 불편해소	-3개소 80m .계촌6리 [L:30m B:4m .계촌3리 [L:30m B:4m .계촌6리 [L:20m B:4m	110,000 (40,000) (40,000) (30,000)	

(단위: 천원)

읍면별	사업명	건의요지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대화면	153번군도 확.포장공사	-개수, 백옥포간 도로의 교통 량 증가 및 하안미 진입 구간 노퍽의 협소(4.5m)로 차량 통 행 지난초래 -진입구간 4km는 81년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한 도로이며 노 면의 파손등으로 통행 불편 및 환경을 저해함.	[L:4km B: 8m 부지매입 12,000m ²	2,000,000	
	면청사시설 개수	-청사협소로 인한 주민편의 및 효율적 행정추진 지난 -주간시간 점등사용으로 직원 건강 피해와 동계 열효율 저 하로 인한 난방비 과다지출 초래	증축:60m ² 내벽개수:민 원실확장 단열창교체: 17개소 80m ² 기타외벽보수 정비	80,000	
	수원 상류 하수 관로 연결사업	-면 상수원 상류에 100여호 집 단가옥 밀집으로 생활 하수 직유입 -변소개량등에 의한 수세식 화 장실 개량 가구 증가 -생활하수의 하수관로 연결사 업을 통하여 수원 하류로 배 출하므로써 맑은 수원 보전을 기할 수 있음.	위치:대화377 리 사업량:500m (600mm)	100,000	

(단위: 천원)

읍면별	사업명	건의요지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봉평면	.남안교 가설	-효석 생가 진입로 정비 -대형사고 사전예방	[L:135m B: 8m	800,000	
	.주차장 설치	-주차질서 확립 -장소:창동4리 421-1번지	면적 4890㎡ (1,480坪) 주차대수 240 대	100,000	
	.가산공원 마무리	- 주민휴식공간 조성 - 공원내 휴게시설 전무함	건물신축 1동 철거보상 1동 기타	35,000	
	.쓰레기 처리 장 후보지 매입	-현 쓰레기 처리장 96년도 계약 만료 -토지가격 상승요인과 변화의 폭이 크므로 사전 매입 -위치:창동1리 114-1외 10필	면적:19830㎡ (6,000坪)	182,000	
	.쓰레기처리 장 진입로 포장	-쓰레기 처리용이	[L:400m B:4m	35,000	
	.봉평면 청사 증축	-청사 협소로 편익시설이용 불편	콘크리트스라 브 30평	30,000	
	.저수지 보수	-한해대책 기여	저수지 준설 (2개소)	51,000	
	.원터보 도수 로 설치	-한해대책 기여	[L:200m B:1m	30,000	

(단위: 천원)

읍면별	사업명	건의요지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전부면	쓰레기 매립 장 진입로 포장	- 우천및 폭설시 쓰레기 수송 불능 - 인근 농경지 농산물 반출 불편	위치:송정1리 [L:1000m B: 4m	100,000	
	고수부지 공 원화 사업	- 시가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주민의 건전여가생활 공간 필요	위치:고수부 지내 진입로포장 [L:150m B:4m 주차시설 1개소 부대시설10종	250,000	
	거문리교량 가설	- 군도 확.포장으로 인하여 도 로면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 편 농경지에 영농 불편을 초 래함.	[L= 20m B= 5m	40,000	

(단위: 천원)

읍면별	사업명	건의요지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도암면	.상수도사업	. APT지구및 다세대 주택건물 증가 . 고원도시추세에 따른 인구 증가 . 99년 동계아시안게임 대비	저수댐 1식 상수관6.1km 집수정1동 상수원 : 차항리	120억	
	.횡계도시계획 재정비	.현 도시계획이 현실정에 불합리하여 사유권 침해등 민원의 발생초래로 조속한 정비요망	-	-	
	.횡계진입로 가로등설치 사업	.진입로 정비시 누락되어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내재	- 726m(15등) -시기:94년중	18,000	
	.공원내 테니스장 설치	.관내 체육시설의 부재로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이 어려움	코트 2면 위치:횡계1리	30,000	

— '9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활 동 상 황



○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설명 청취 (도암면)



- 사업장 : 평창읍 천변리 주차장 조성공사
- 내 용 : 돌출차단시설등 주차시 안전시설 설치를 요함.



- 사업장 : 진부 송정지구 택지조성사업
- 내 용 : 택지내 지선도로 협소로 인한 주차시설확대및 미분양 택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사업장 : 진부 고수부지 조성공사
- 내 용 : 고수부지면이 너무 높고 돌망태시설 모서리 부분의 응벽설치가 필요함.

평창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년월일 : 1994.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이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함.

평창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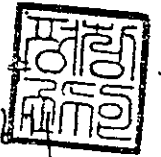
평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1994.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이 (2)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경감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평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대상)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경감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P
----------	-----

제출년월일 : 1994.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조정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제외대상 범위 상향조정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대상조정,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개정(안 조례제7조제2항제2호)
- 나. 행정재산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대상 범위확대 300만원이하를 1,000만원이하 상향 조정(안 조례제11조제3항제3호)
- 다. 사용허가 기간 삭제(안 조례제13조제2항)
- 라.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확대조정(안 조례제22조제1호 제2호 5 ~ 7호)
- 마.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하향조정(안 조례제23조제1항 제2항)
- 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금고업무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요율 적용을 연 15%로 조정(안 조례제28조)
- 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영제95조제2항24호를 영제95조제2항25호로 변경(안 조례39조의 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한다.

제11조제3항제3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시·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산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중요재산의 대부분 또는 매각에 관한사항</u></p>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용허가</u></p>
<p>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2 (생략)</p> <p>3. <u>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u></p>	<p>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1천만원</u></p>
<p>제13조 (사용허가기간) ① (생략)</p> <p>② <u>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수있다.</u></p>	<p>제13조 (사용허가기간) 현행제1항과 같음</p> <p>② <u>삭 제</u></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생략)</p> <p>1. <u>시에 소재하는 갑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u></p> <p>2. <u>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갑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u></p> <p>3~4 (생략)</p> <p><u>(신 설)</u></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현행과 같음)</p> <p>1. <u>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2. <u>삭 제</u></p> <p>3~4 (현행과 같음)</p> <p>5. <u>천재, 지변, 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u></p>

(신 설)

(신 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
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한다. 다
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
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
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
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
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6. 시·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
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
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
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
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①
.
.
. 취락개선사업에 . .
.
②
.
.
. 1,000분의 50
. 1,000분의 8
.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9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
로한다.

제39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
.
.

관계 법령 발췌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그 구역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3. 그 구역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을 때
4. 그 구역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5. 그 구역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6. 그 구역안에 인구·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 불량의 기준 기타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6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